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968
----------	------

발의연월일 : 2017. 11. 1.

발 의 자 : 유재중 · 박성중 · 윤재옥
홍철호 · 강석호 · 황영철
김영호 · 이헌승 · 김도읍
박순자 의원(10인)

제안이유

현재 국가 소유의 재산과 물품은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으로 각각 규율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과 물품은 하나의 법률로 규율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은 그 성격이나 관리방법 등이 상이한 공유재산과 물품을 하나의 법률로 규율함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가와 같이 공유재산과 물품을 개별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으로 분리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상호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의 구성 체계를 「국유재산법」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록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근거와 현물출자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도입하며, 유희 공유재산의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민간사업자도 일반재산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체계를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현행법의 제명을 「공유재산법」으로 변경함.
- 나. 단년도 위주의 재산 관리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중장기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상호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의 규율체계를 「국유재산법」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면서 일부 규정을 새로이 신설함(안 제10조, 제31조, 제38조, 제39조, 제43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8조,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82조, 제85조, 제89조, 제104조 및 제105조 등).
- 라.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수익금을 재원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함[안 제2장(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 마. 유희 공유재산의 개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일반재산의 개발에 민간사업자도 참

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후 평가체계를 구축함
(안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등에 대한 현물출자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
장제7절(제68조부터 제73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재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
안」(의안번호 제99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유재산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란 공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처분”이란 공유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 “지방자치단체출자기업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였거나 출자할 기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6. “사용·수익허가”란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7. “대부계약”이란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공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5.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

물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사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사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

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8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성 있게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 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합하여 작성한 종합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제1항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⑩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15조 단서에 따른 무상에 의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에 관한 사항
4. 제24조에 따른 공유재산기금의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5. 제34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6. 제64조에 따른 민간참여 개발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제65조에 따른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및 사업제안서에 관한 사항
8. 제66조에 따른 출자지분의 회수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공유재산의 취득)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13조(등기·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의 명칭인 “교육감”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전환, 분할·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14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5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① 재산관리관이나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9조(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20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공유재산관리기금

제22조(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공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제2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공유재산관리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4조에 따른 차입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수입금
 - 가.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 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5. 지방자치단체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제58조의 개발에 따른 관리·

처분 수입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24조(자금의 차입)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등이나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5조(공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① 공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제24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26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5. 제17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6. 제58조에 따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②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26조(공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영) ①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공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출납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수탁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장 행정재산

제28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제29조(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3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같은 재산에 대하여 수 회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이 된 경우 그 사용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 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35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철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7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원상회복)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

36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39조(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40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사권설정,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43조(개척·매립·간척·조립을 위한 예약) ① 일반재산은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립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약 상대방은 그 사업기간 중 예약된 재산 또는 사업의 기성부분(既成部分)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사업의 일부가 이미 완성된 때에는 공익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기성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약 상대방에게 대부·매각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제2절 대부

제44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계약의 갱신 또는 대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5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대부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제45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대부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대부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47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재산을 점유(이하 “상호 점유”라 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8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

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45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제45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절 매각

제49조(매각)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4조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8조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제50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51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 중 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소유권의 이전 등) ①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

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3조(매각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제50조에 따라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4조(건물 등의 매수) 일반재산의 매각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제된 경우 그 재산에 설치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제42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알린 경우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4절 교환

제55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상호 점유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점유 중인 일반재산과 교환을 요청한 경우

5.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제5절 양여

제56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
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
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양여계약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양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지하거
나 해제할 수 있다.

1.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양여한 경우에 양수자가 지정된 날
이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이를
제공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절 개발

제58조(개발) ① 일반재산은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거나 제59조·제62조 및 제64조에 따라 개발하여 분양·임대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2.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3.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

제59조(신탁개발) ① 일반재산(토지와 그 정착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을 할 때에는 이 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2. 임대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

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3. 혼합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의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④ 제3항의 신탁의 종류에 따른 신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신탁: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2. 임대형 신탁 및 혼합형 신탁: 30년 이내

⑤ 제4항의 신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4항에 따른 신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신탁보수 등) 제59조에 따른 신탁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신탁업자의 신탁보수, 신탁업자의 선정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일반재산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할 때

2. 수탁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⑤ 위탁기간 등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위탁재산의 개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한다) 및 수탁기관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민간사업자 및 수탁기관은 다른 개발의 종류를 제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다.

1. 분양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2. 임대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3. 혼합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

에 내는 개발

③ 제2항의 개발의 종류에 따른 위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개발: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2. 임대형 개발: 30년 이내

3. 혼합형 개발: 분양형 개발부분은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개발부분은 30년 이내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재산의 일부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익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민간사업자를 통한 개발의 절차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제63조(수탁기관의 보수 등) 제62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민간사업자·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민간참여 개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1.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재산

2.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제1항의 개발을 위한 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한도, 출자지분 회수방법, 투자회사의 사업비 조달 제한대상 및 그 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5조(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2조 및 제64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개발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민간참여 개발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민간참여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대상 재산 및 시설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추정 투자금액·건설기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사전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포함한다)
4. 민간사업자 모집에 관한 사항
5.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발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분석 및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민간참여개발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참여개발자문단은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공유재산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민간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공고된 민간참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내용, 수익배분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이하 “사업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민간전문가가 과반수로 구성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평가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한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⑨ 제7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은 조례로 정한다.

제66조(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민간 참여 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평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사업부실 등으로 개발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출자지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7조(손해배상책임) 제65조제7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자가 사업제안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7절 현물출자

제68조(현물출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9조(현물출자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출자기업체는 제68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의 필요성
2. 출자재산의 규모와 명세
3. 출자재산의 가격평가서
4. 재무제표 및 경영현황
5. 사업계획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출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물출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현물출자의견서 및 현물출자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현물출자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0조(출자가액 산정) 제68조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일반재산의 출자가액은 제42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산정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액면가에 따른다.

제71조(출자재산 등의 수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기준일부터 출자일까지의 기간에 현물출자 대상재산이 멸실·훼손 등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출자재산이나 출자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물출자 대상재산의 변동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

산가치 이하로 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자산가치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할 수 있다.

제73조(「상법」의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출자기업체가 제69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에는 「상법」 제295조제2항, 제299조제1항, 제299조의2와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제74조(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30조제2항 본문 및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저작권등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다.

제75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4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의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기간 동안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방법은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다.

제76조(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제3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지식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7조(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에 지식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제78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제35조 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지식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등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5조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경우에는 이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79조(저작권의 귀속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 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대장(臺帳)과 보고

제80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

원 또는 제61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을 관리(체납처분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하거나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2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 ①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제61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의 직원은 그 위임·위탁 사무의 수행이나 제80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3조(가격 평가 등)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4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면 증감의 원인별·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제85조(멸실 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86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를 한 자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제46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제87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2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88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9조(소멸시효) ①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87조제2항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납부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
2. 교부청구 중의 기간
3.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이 법에 따른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2.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3.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제90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91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2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자에게는 이를 수익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100분의 80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한꺼번에 내게 할 수 있다.

1. 자진 반환
2. 재판상의 화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

제93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4조(공유재산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관리의 제도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련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활용, 공표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공유재산책임관, 재산관리관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96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97조(공유재산 자료요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 관리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8조(공유재산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99조(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0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101조(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대부·사용·신탁·매각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에 기여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재활동비(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준용) 공유재산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03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104조(변상책임) ①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5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유재산심의회, 제65조제3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자문단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별칙

제106조(별칙)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은 2019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반하여 공유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

법」”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8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제16조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을 “「공유재산법」 제16조·제35조제1항·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의6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를 “「공유재산법」 제15조”로 한다.

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6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
으로 한다.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⑦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
으로 한다.

⑧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
법」”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⑩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35조제4항제3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를 각각 “「공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30조”로 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제2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를 “「공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전단 및 제5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⑪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및 제7조제2항제6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를 각각 “「공유재산법」 제5조”로 한다.

⑫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⑬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⑮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⑯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항 본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를 “「공유재산법」 제35조”로 한다.

⑰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⑱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1항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공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②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도”를 “「공유재산법」에 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30조”로 한다.

제58조제2항 전단 및 제59조제1항·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④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②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②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3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를 “「공유재산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20조”를 “같은 법 제30조”로 한다.

제11조의9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제11조의9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공유재산법」 제16조”로 한다.

②6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을 “「공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②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공유재산법」 제16조”로 한다.

㉚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2항 및 제100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9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㉛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③②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③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8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③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를 “「공유재산법」 제17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을 “「공유재산법」 제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③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5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30조”로 한다.

③⑥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㉟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제33조제2항 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공유재산법」 제8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를 “「공유재산법」 제41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공유재산법」 제8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를 “「공유재산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단서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㊱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5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㊲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29조”
를 “「공유재산법」 제8조·제41조”로 한다.

④⑩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
으로 한다.

④⑪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④⑫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
으로 한다.

④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
으로 한다.

④⑭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④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④⑥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④⑦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④⑧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0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4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1조 및 제60조”로 한다.

제66조제1항·제2항, 제68조제2항 전단 및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④⑨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

으로 한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제64조제2항 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공유재산법」 제8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를 “「공유재산법」 제41조”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제66조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공유재산법」 제8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를 “「공유재산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단서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를 “「공유재산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공유재산법」 제1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같은 법 제22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를 “「공유재산법」 제6조”로 한다.

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공유재산법」 제8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를 “「공유재산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㉒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6항 전단·제7항 전단·제8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㉓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36조”를 “「공유재산법」 제41조 및 제49조”로 한다.

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0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전단 및 제34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⑤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⑤⑥ 독립기념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⑤⑦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⑤⑧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5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제2항 본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⑤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⑥0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⑥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공유재산법」 제16조”로 한다.

⑥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⑥3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⑥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및 제36조제1항·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를 “「공유재산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⑥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를 “「공유재산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20조”를 “같은 법 제30조”로 한다.

⑥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⑥⑦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⑥⑧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⑥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⑦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공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㉑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본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㉒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6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와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16조 및 제30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16조 및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를 “「공유재산법」 제48조”로 한다.

㉓ 법률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8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 및 제40조”로 한다.

제55조제1항제8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

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항 본문·제4항 본문·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을 “「공유재산법」 제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⑦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⑧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⑨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45조의12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8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30조”로 한다.

㉞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19조”를 “「공유재산법」 제16조 및 제28조”로 한다.

㉟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19조 및 제28조”를 “「공유재산법」 제16조·제28조 및 제40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을 “「공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공유재산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한다.

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8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30조”로 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를 “「공유재산법」 제42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를 “「공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5조”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제38조제7항 후단 및 제46조의6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제46조의7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을 “「공유재산법」 제35조제1항·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공유재산법」 제1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제32조”를 “「공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45조”로 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4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를 “「공유재산법」 제14조”로 한다.

제28조의3제2항 및 제34조제2항 전단·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③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공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④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2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

법」”으로 한다.

⑧5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⑧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제45조의2제3항 및 제58조제4항·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1조”를 “「공유재산법」 제35조·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공유재산법」 제16조”로 한다.

⑧7 생활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⑧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㉘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를 “「공유재산법」 제41조”로 한다.

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㉚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를 “「공유재산법」 제5조”로 한다.

㉛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4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㉝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6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㉞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⑨6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를 “「공유재산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를 “「공유재산법」 제29조 및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을 “「공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⑨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⑨8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⑨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9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⑩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⑪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1조”를 “「공유재산법」 제35조·제4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공유재산법」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3조·제32조·제33조”를 “「공유재산법」 제32조·제33조·제45조·제46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를 “「공유재산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34조”를 “「공유재산법」 제34조·제47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⑫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를 “「공유재산법」 제41조”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를 “「공유재산법」 제41조”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를 “「공유재산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를 “「공유재산법」 제56조”로 한다.

⑩③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⑩④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⑩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공유재산법」 제8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를 “「공유재산법」 제41조”로 한다.

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공유재산법」 제16조”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5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⑪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⑫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을 “「공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공유재산법」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2조 및 제35조”를 “「공유재산법」 제32조·제45조 및 제48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를 “「공유재산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를 “「공유재산법」 제32조·제34조·제45조 및 제47조”로 한다.

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⑪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⑫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제29조의3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⑭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⑮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⑯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공유재산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42조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를 각각 “「공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를 “「공유재산법」 제51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공유재산법」 제16조”로 한다.

⑪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⑫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⑬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⑭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6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⑮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⑯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⑭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⑮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를 “「공유재산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2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공유재산법」 제8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를 “「공유재산법」 제41조”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⑯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① 「공유재산법」 제14조제1호, 제31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33제1항, 제3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3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2조,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3항, 제51조제1항 본문·단서,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제5호, 제60조, 제61조제1항, 제63조, 제91조,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0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32조제2항·제3항, 제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8조제1항제4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를 「공유재산법」 제28조”로 한다.

제152조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를 “「공유재산법」 제28조, 제30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5조,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공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제165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을 “「공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공유재산법」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를 “「공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3조, 제45조 및 제46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를 “「공유재산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를 “「공유재산법」 제34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222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제461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를 “「공유재산법」 제28조”로 한다.

⑫⑧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1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⑫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6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같은 법 제11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⑮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0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⑯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을 “「공유재산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⑬④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1항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공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지방자치
단체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⑬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
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5조”를 “「공유재산법」 제6조”로 한다.

제19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⑬⑥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
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1항·제31조제1항”을 “「공유재산법」 제35조제1항·제44조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
조”를 “「공유재산법」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제23조·제32조·제33조”를

“「공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45조·제46조”로 한다.

⑬⑦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⑬⑧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2항 및 제36조의7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⑬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⑬⑩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및 제15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⑬⑪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유휴 공유재산의 개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일반재산의 개발에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을 “「공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공유재산법」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를 “「공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를 “「공유재산법」 제51조”로 한다.

⑭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⑮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⑯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를 “「공유재산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20조”를 “같은 법 제30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⑭⑥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⑭⑦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6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을 “「공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공유재산법」 제16조”로 한다.

⑭⑧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7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⑭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⑮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1조”를 “「공유재산법」 제35조·제44조”로 하고, 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를 “「공유재산법」 제32조”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제40조”를 “「공유재산법」 제28조 및 제56조”로 한다.

⑯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를 “「공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⑰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28조”를 “「공유재산법」 제8조 및 제40조”로 한다.

⑱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를 “「공유재산법」 제56조”로 한다.

⑳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7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⑮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⑯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⑰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공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⑱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⑲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

으로 한다.

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⑪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본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를 “「공유재산법」 제61조”로 한다.

⑫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⑭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⑮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⑯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①67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①68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를 “「공유재산법」 제40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①69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공유재산법」 제8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를 “「공유재산법」 제41조”로 한다.

①7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을 “「공유재산법」 제16조·제35조

제1항·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5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⑱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공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⑲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4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를 “「공유재산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⑳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6항 및 제7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전단 및 제77조제1항·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9호 및 제57조제1항제28호 중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각각 “ 「공유재산법」 제30조”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을 “ 「공유재산법」 제16조·제35조제1항·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